

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현행 규칙은 위원회가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공탁 관련 업무원가 및 보상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즉, [공탁출연금 = 공탁금운용수익 - 이자 - 보험료 - 업무원가 - 보상이윤] 이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이 됨
- 그러나, 보상이윤은 보관은행이 타 업무나 사업에 동일한 원가나 비용을 투입하였을 경우에 획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윤을 의미하는 바, 현 출연금 산정모형에서는 보관은행의 실질 운용수익을 알 수 없음에도 단순 가정적 수익률(정기예금이자율)로 공탁금 운용수익을 산정하여 보상이윤을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의 여지가 있어 자금의 조달측면과 운용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
- 또한, ① 보상이윤이 관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관은행이 원가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, ② 영업이익율을 기준으로 보상이윤이 산출됨에 따라 보상이윤을 인정하는 것이 출연금 산정모형의 논리적 정합성을 저

해할 우려가 있고, 보관은행의 초과이윤 획득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음

- 따라서, 보상이윤을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에서 제외하여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데 있어 보상이윤을 제외함(안 제19조제1항)

4.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

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업무원가 및 보상이윤 등”을 “업무원가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출연금액의 확정 등)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 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 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공탁 관 련 <u>업무원가 및 보상이윤 등을</u>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 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 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19조(출연금액의 확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업무원가 등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880